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69

발의연월일: 2025. 4. 23.

발 의 자:신영대·강준현·송기헌

추미애 • 김기표 • 김영환

박희승 · 천하람 · 한준호

임오경 · 홍기원 · 이학영

박수현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,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한편,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성범죄 등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를 한 교원을 신속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인사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여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).

법률 제 호

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 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②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직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. 이경우 직위의 해제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8조의2(직위의 해제) ① (생	제58조의2(직위의 해제) ①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&lt;신 설&gt;</u>	②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이		
	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	
	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		
	권자에게 직위의 해제를 요구		
	할 수 있다. 이 경우 직위의 해		
	제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		
	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		
	<u>야 한다.</u>		
② <u>제1항</u> 에 따라 직위를 부여	③ 제1항 및 제2항		
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			
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			
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	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
<u>④</u> 임용권자는 <u>제3항</u> 에 따라	<u>⑤</u> <u>제4항</u>		
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			
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			
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			
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			
한다.			

<u>⑤</u> (생 략)
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